

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
운용계획 변경안  
**심사보고서**

의안 번호	3643
----------	------

2026년 4월28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6. 4.15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6. 4.15
4. 상정일자 :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4.24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이동률)

- 의안번호 제3643호 「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- 안건의 주요 내용 중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,000억원을 수입 계획하려는 것임
- 지출계획은 고유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에 직면한 공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으로 '출자금'을 1,000억원 순증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임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 지원에 따라 2026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일반회계 전입금(순세계잉여금) 적립 및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249,996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100,000백만원 증가)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표 3-1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초 예산 (A)	1차 변경(안) (B)	증 감 (C=B-A)
합 계	149,996	249,996	100,000
기 타 회 계 전 입 금	-	100,000	100,000
이 자 수 입	20,981	20,981	-
예 치 금 회 수	129,015	129,015	-

○ 수입계획 변경

－ 일반회계 전입금(순세계잉여금) 적립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 
100,000백만원 증가

▶ 기타회계전입금: (당초) 0백만원 → (변경) 100,000백만원

〈표 3-2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/편성목	당초 예산 (A)	1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율 (D=C/A)
<b>합 계</b>	149,996	249,996	100,000	
<b>효 율 적 재 정 운 영</b>	-	100,000	100,000	(신규)
공사·공단 상환 지원	-	100,000	100,000	(신규)
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	-	100,000	100,000	(신규)
출 자 금	-	100,000	100,000	(신규)
<b>재 무 활 동</b>	149,686	149,686	-	-
보 전 지 출	149,686	149,686	-	-
여 유 자 금 예 치	9,596	9,596	-	-
예 치 금	9,596	9,596	-	-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75,000	75,000	-	-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65,090	65,090	-	-
<b>행 정 운 영 경 비</b>	310	310	-	-

○ 지출계획 변경

－ 고유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 
공사채 상환용 출자지원으로 출자금 100,000백만원 증가

▶ 출자금: (당초) 0백만원 → (변경) 100,000백만원

### 3. 검토의견<sup>1)</sup>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수입계획에 계상하고, 지출계획에는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으로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  - 수입계획의 경우, 일반회계로부터 1,000억원을 전출 받아 동 기금의 수입계획 중 **기타회계전입금(1,000억원)**으로 수입계획하려는 것으로,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타회계전입금은 '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중 일부를 결산 전 우선 반영하는 것인 바,
  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7조<sup>2)</sup>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, 전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입계획에 우선 반영하려는 **기타회계전입금**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3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초 예산 (A)	1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
합 계	149,996	249,996	100,000
기 타 회 계 전 입 금	-	100,000	100,000
이 자 수 입	20,981	20,981	-
예 치 금 회 수	129,015	129,015	-

- 수입계획과 연동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도 1,000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정책사업인 **①효율적 재정운영**을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**출자금** 1,000억원을 순증하여 지출계획하고자 하는 것임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7조(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)

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·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.

〈표 3-4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/편성목	당초 예산 (A)	1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<b>합 계</b>	149,996	249,996	100,000	
효 율 적 재 정 운 영	-	100,000	100,000	(신규)
공사·공단 상환 지원	-	100,000	100,000	(신규)
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	-	100,000	100,000	(신규)
출 자 금	-	100,000	100,000	(신규)
<b>재 무 활 동</b>	149,686	149,686	-	-
보 전 지 출	149,686	149,686	-	-
여 유 자 금 예 치	9,596	9,596	-	-
예 치 금	9,596	9,596	-	-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75,000	75,000	-	-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65,090	65,090	-	-
<b>행 정 운 영 경 비</b>	310	310	-	-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3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이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해 정책사업(효율적 재정운영)을 신설하여 출자금 1,000억원을 순증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안 제출에 앞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4)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하여 법정 사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됨<sup>5)</sup>

- 또한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<sup>6)</sup>는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을 지출계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

-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설립 근거인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<sup>7)</sup>는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27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'26년 4월 현재까지 24조 5,816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어<sup>8)</sup> 조례로 정한 출자한도에 여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

4) 「지방기금법」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5) 서울특별시, 예산담당관-4499('26. 4.13) “2026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”

6)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
2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, 보조금 또는 융자금
3.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4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5.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
6.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

7)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자본금)

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7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8) 서울특별시, 도시철도과-5145('26. 4.17) “서울교통공사 출자금 현황('24~'26년)”

○ 다만, 지출계획 중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9)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「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」 10)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증액 요청된 출자금의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의 출자동의안 승인 여부와 연동하여 지출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**

**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**

**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「소위원회 미구성」**

**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**

**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6. 4.24)**

---

9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0) 「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」

① 의안번호 : 3647, ② 발의 : '26. 4.15, ③ 회부 : '26. 4.15, ④ 심의 : '26. 4.22

#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6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4월 1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지원에 따라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대비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일반회계 전입금(순세계잉여금) 적립 및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- 나. 운용규모: 249,996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100,000백만원 증가)
-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< 수입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 예산 (A)	1차 변경안 (B)	증감 (C=B-A)
<b>합계</b>	<b>149,996</b>	<b>249,996</b>	<b>100,000</b>
기타회계전입금	-	100,000	100,000
이자수입	20,981	20,981	-
예치금회수	129,015	129,015	-

< 지출계획 >

(단위:백만원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/편성목	당초 예산 (A)	1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율 (D=C/A)
<b>합 계</b>	<b>149,996</b>	<b>249,996</b>	<b>100,000</b>	
효 율 적 재 정 운 영	-	100,000	100,000	(신규)
공사·공단 상환 지원	-	100,000	100,000	(신규)
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	-	100,000	100,000	(신규)
출 자 금	-	100,000	100,000	(신규)
<b>재 무 활 동</b>	<b>149,686</b>	<b>149,686</b>	-	-
보 전 지 출	149,686	149,686	-	-
여 유 자 금 예 치	9,596	9,596	-	-
예 치 금	9,596	9,596	-	-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75,000	75,000	-	-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65,090	65,090	-	-
<b>행 정 운 영 경 비</b>	<b>310</b>	<b>310</b>	-	-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전입금(순세계잉여금) 적립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 
100,000백만원 증가

▶ 기타회계전입금: (당초) 0백만원 → (변경) 100,000백만원

○ 지출계획 변경

- 고유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 
서울교통공사에 공사채 상환용 출자지원으로 출자금  
100,000백만원 증가

▶ 출자금: (당초) 0백만원 → (변경) 100,000백만원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
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6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, (...)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2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, 보조금 또는 융자금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이지나 (☎ 2133-6866)